

[별표 2]

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
(제21조제2항 관련)

구분	훈련의 종류 및 내용
소 규모 원자력사업자 이외의 원자력사업자	1. 최초훈련 : 원자력시설의 사용개시전(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는 최초 정격열출력 5%이전)에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할 것. 이 경우 신규 부지에 원자력시설을 건설하는 원자력사업자는 제4호의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할 것. 2. 부분훈련 : 1개 또는 2개 호기(사용후핵연료의 저장·처리시설의 경우는 부지)에 대하여 비상조직별로 매 분기 1회 이상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할 것 3. 전체훈련 : 전 비상조직이 참여하여 1개 또는 2개 호기별(사용후핵연료의 저장·처리시설의 경우는 부지별)로 매 년 1회 이상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할 것 4. 합동훈련 :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부지별로 2년에 1회 이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거주자가 소개·대피하여야 하는 정도의 사고를 가정하여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할 것 5. 연합훈련 :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방사능방재훈련계획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거주자가 소개·대피하여야 하는 정도의 사고를 가정하여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할 것.
영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소 규모 원자력사업자	1. 최초훈련 : 원자력시설의 사용개시 전에 전 비상조직이 참여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할 것 2. 부분훈련 : 부지내의 비상조직별로 매 분기 1회 이상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할 것 3. 전체훈련 : 전 비상조직이 참여하는 훈련을 매 2년 1회 이상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할 것. 이 경우 소규모원자력사업자 이외의 원자력사업자가 동일부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원자력사업자 이외의 원자력사업자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사능방재훈련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.

비 고

1. 제5호의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당해 발전소(발전용원자력시설이외에는 당해 호기 또는 부지)에 대한 제3호 및 당해 부지에 대한 제4호의 방사능방재훈련을, 제4호의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한 연도에는 당해연도의 당해 발전소(발전용원자력시설이외에는 당해 호기 또는 부지)에 대한 제3호의 방사능방재훈련을, 제3호 내지 제5호의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한 분기에는 당해 분기의 제2호의 방사능방재훈련을 면제한다.